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5. 17.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5.2.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6.5.4.
- 다. 상정일자 : 제20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16.5.17.)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세무1과장 박현옥

### 가. 제안이유

현행 조례 조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지방세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만 조례에 반영하고 근거 없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며,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회의를 통한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의해 달리 규정할 수 있는 세율에 대해 법제

운영 효율성 고려 정비(1개 조항)

- 법제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례에 의한 적용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통일(안 제6조)

○ 지방세관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조문 정비(4개 조항)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안 제5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납기(안 제7조, 안 제9조), 재산세 종과대상 지역(안 제8조)

○ 기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규정(4개 조항)

- 목적(안 제1조), 정의(안 제2조),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안 제3조), 시행규칙(안 제4조)

### 3. 검토보고 (김은모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2015. 8월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시·도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조례 적용을 위해 기본조례(표준조례)안을 마련·시달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등록면허세·재산세 과세표준, 세율, 납기 등)등을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 조항은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 지방세법 개편 내용(2011년도)

종 전	개편 후	자치단체 조례
지방세법(총칙편)	지방세기본법	마포구 구세 기본조례
지방세법(개별법)	지방세법	마포구 구세 조례
지방세법(면제경감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마포구 구세 감면조례

####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위임하는 사항만 마포구 구세 조례에 반영하여 마포구 구세 조례 19개 조항을 9개 조항으로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현 행	개 정	비 고
19개 조항	9개 조항	

- 1)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의해 달리 규정할 수 있는 세율 정비=> 1개 조항
  - 안 제6조(지자체 조례 적용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통일)
- 2) 지방세관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조문 정비=> 4개 조항
  - 안 제5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안 제7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안 제8조(재산세 종과대상 지역), 안 제9조(재산세의 납기)
- 3) 기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규정=> 4개 조항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안 제3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안 제4조(시행규칙)

○ 주요 조항별 개정내용으로는

가.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의해 달리 규정할 수 있는 세율 정비

- 1) 안 제6조(지자체 조례 적용세율 통일) 법제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적용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통일

나. 지방세관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조문 정비

- 1) 안 제5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2) 안 제7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함
- 3) 안 제8조(재산세 종과대상 지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함

- 4) **안 제9조 (재산세의 납기)**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음

**다. 기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규정**

- 1) **안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2)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3) **안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름
- 4)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라. 동(同) 조례 삭제, 신설, 변경 현황**

**[삭제 조례 현황]** 제6조(신고 및 납부), 제7조(세율), 제9조(비과세 신청), 제10조(세율), 제13조(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제14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제15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제16조(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제17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제18조(공용·공익 사업용의 폐지신고), 제19조(납세관리인의 지정)

**[신설 조례 현황]**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변경 조례 현황]** 제4조(과세표준)=>제5조(과세표준), 제5조(세율)=>제6조(세율), 제8조(납기)=>제7조(세율), 제11조(중과대상지역)=>제8조(중과대상 지역), 제12조(납기)=> 제9조(납기)

=> “별표 1” 마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 현황표 1부

○ 검토의견으로는 동(同) 조례안은 2016.3.31.~4.20.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문제점도 없으며, 또한 새로 개정된 「지방세법」 등 지방세관계법의 개정사항 및 행정자치부 기본조례(표준조례)안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그 동안 상위법인 지방세관계법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으로 주민의 지방세 관련 민원 불편해소와 재산권 피해 방지 등 효율적인 세무행정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